

어업자원 지대 및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 성 쾌[†]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A Political-Economic Study on Fisheries Resource Rent and Rent-Seeking Behaviors

Seong-Kwae PARK[†]

Faculty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2, 2005 / Accepted October 25, 2005)

Abstract

Fishery resource rents(i.e. windfall gains or excess profit), which tend to lead a variety of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problems, have been a fundamental cause of unbalance between fishery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hus, there may exist several sorts of optimal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such as economic maximum sustainable yield, biological maximum sustainable yield, social optimum production, socio-political optimum yield, etc. The fishery resource use level seems to a large extent to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s rent seeking structure.

As well known, fishery resources as common properties have a characteristic of being difficult to establish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ir use rights are controlled by the permit and/or the license system. As a result, absolute or differential rents are formed by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nt problems are often transformed into serious socio-political issues when the rent in a given industry is much higher to a socially unacceptable extent than the averag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ndividual fishermen or fishermen's groups tend to behave aggressively to change the existing fishery institutions towards maximizing fishery rents. These rent-seeking behaviors often tend to nullify fishery management schemes. The larger is the relative rent difference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the more aggressive tend to be the rent-seeking behaviors in fisheries.

Key Words : Fisheries rent, Rent-seeking behavior, Common property, Property right

I. 서 론

어업자원 중 하나로서 상업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첨단과학기술이 만개하고 있는 현대사

오래 동안 어업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천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511, skpark@pknu.ac.kr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로 수행한 것임.

회에서도 여전히 어업자원은 채취(catch) 또는 어획(exploitation)에 의한 상업적 이윤추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지 달라진 것은 어업자원을 채취 또는 어획하는 방법과 규모와 속도이다. 더욱이 오늘날 어업자원의 채취 또는 어획은 더욱 정교하게 광역적으로 신속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의 경우, 인간의 어획능력이 어업자원의 자연재생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수산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딜레마(dilemma)는 어업자원의 지속성과 어업자원 이용의 지속성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이며, 이와 연관된 소득 및 정부재정지원 문제다. 우리는 이 딜레마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의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즉, 심각한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어업자원 스스로가 자연적 평형을 동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는 『동태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체계 내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근본적인 동인은 무엇이며, 그 동인은 결국 어업자원 관리와 정부재정지원 그리고 소득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본능적 이윤(특히 초과이윤 또는 지대)추구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양하고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구매와 자본축적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심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정상이윤+초과이윤 또는 지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¹⁾ 여기서 초과이윤(지대)은 경

제·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지대이론은 A. Smith(1776), T. Malthus(1815), D. Ricardo(1817), J. Thünen(1826), A. Marshall(1890), K. Marx(1894), P. Samuelson(1995) 등에 이르면서 집대성되었으며, 岡本清造(1979)는 어장지대를 마르크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이어서 지대론은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지대추구이론으로 연계·발전되었고,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는 J. Buchanon과 G. Tullock(1962), M. Olson(1965), A. Krueger(1974), R. Tollison(1982), G. Becker(1991) 등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해왔다. 최근 Schmitz-Furtan-Baylis(2002)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지대추구이론을 농업정책과 에그리 비즈니스(agribusiness)에 적용하였다.

어업의 경우, 어업인들의 중심적 생산재화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해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산물이다. 수산물은 자가 소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업활동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대부분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지대)을 창출하고 그 초과이윤은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재화를 구매하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사용된다. 초과이윤 창출이 어업인들로 하여금 어업활동을 영위케 하는 본원적 동기라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대 창출동기와 이윤 자체가 지니는 성격과 특징 그리고 사회·경제·정치적 영향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중요해진다. 1954년 H. S. Gordon이 신고전경제이론을 어업관리 문제에 적용하여 어업자원 지대를 최초로 분석한 이래 정교한 경제수학 모형을 이용한 어업지대와 어업지대추구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²⁾

1)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모든 이윤·지대추구(경제 활동)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입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 입법이라는 정치적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초과이윤(지대)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2) Gould(1972), Griffin, Laceywell and Nichols(1976), Anderson(1977,1982), Hannesson(1989), F. Steven and A. Steven(1993), Grafton(1994, 1995), Bertignac, Campbell, Hampton, Hand(2001) 등은 신고전경제학적 지대개념을 어업지대에 적용하였으며, Bergland, Clark, and Pedersen(2002),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자원)지대 관련 연구는 어업관리정책이 어업자원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치경제학적 지대추구이론에 입각한 어업지대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Bergland-Clark-Pedersen(2002)과 Edwards(2002)는 특정 어업관리정책의 시행 전 개별 어업인이 가지는 남획유인(over-fishing incentives)이 지대추구를 유인한다는 가정 하에서 어업관리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어업활동을 지대추구활동으로 봤다. 그러나 어업자원관리정책을 지원하는 법제도는 반드시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별 어업인 또는 어업인 단체는 어업지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제정 또는 개정되도록 입법부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이 바로 자원관리 당국이 주요 어업관리정책 목표, 즉 어업자원의 지속성 향상과 어업지대(어업소득) 제고를 때때로 실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i) 어업자원지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즉, 지대)의 성격을 분석하고, (ii) 어업관리 당국과 어업인들의 정치경제적 행위가 어업자원 상태와 어업지대 소멸/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iii) 어업인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 문제 사이의 관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II. 어업자원 지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가치법칙

어업자원(또는 어장)은 고래로 중요한 식량의 보편적 생산수단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큰

Edwards(2002) 등은 어업지대추구행위를 관리정책 또는 관리제도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원적 어업생산수단이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문제가 개입되는 한, 어업자원문제는 경제·사회적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어업자원의 이용 및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지대(rent/excess profit)와 정상이윤(normal profit)의 분화를 본질적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에서 지대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근대화에 발맞추어 이윤의 분화적 형성, 즉 정상이윤과 지대를 기반으로 자본축적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대 문제는 분배 및 조세 정의, 정부재정지원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업자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지대의 명확한 인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지대이론 자체에 관한 많은 속설이 있지만, 전통적 정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세적 생산을 대상으로 할 때 전형적인 이론의 발전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대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자본제 하에서의 차액지대나 절대지대 등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봉건지대로서 조용조(租庸調)³⁾와 같은 것도 있으며 그밖에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지대유형은 더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지대는 어업생산이나 농업생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독립적

3)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율령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채택하였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세제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뒤 고려와 조선시대의 세제도 조·용·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명칭과 부과내용이 복잡하게 변천되었다. 조(租)는 세(稅)·조세(租稅)·공(貢) 등으로, 역(役) 또는 용(庸)은 요·요역·부(賦)·공부(貢賦)·포(布) 등으로, 조(調)는 공(貢)·공부 등으로 불렸고, 서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 조(租)는 과세의 대상이 전결(田結)이어서 부과율이 뚜렷하였지만, 용(庸)·조(調)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되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중기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어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용(庸)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초기에는 용(庸)·조(調)의 부담이 조(租)보다 더 무거웠으나 후기에는 조(租)가 제일 무거워지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정도도 바뀌었다(파스칼 대백과사전, 동서문화사, 2003).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님으로 문제는 적절하고 명확한 공통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상적 개념화 작업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대의 개념을 추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현실경제를 떠나서 개념만을 전개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적 생산기구 자체는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독점자본제하의 지대이론을 먼저 해명하고 그것의 역사적 형태인 순수자본제 하에서의 가치에 근거한 지대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독점자본제 역시 본질적으로 자본제적 생산관계를 떠나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제적 지대개념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현실적 고려 하에서, 이를 토대로 독점자본제하의 가치 및 지대를 일단 왜곡된 형태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전형적 자본제 하에서 가치법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원래 가치법칙이 인간사회의 물질적 기본법칙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코 자본제 하의 가치법칙이 유일한 존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제 하에서의 가치법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치(value)라고 하는 기초적 개념이 중요하다. 가치는 그 자체로 인간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소외된 노동』이며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외화(外化) 또는 소외(상실)에 따른 창조적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김 1978). 예컨대 상품의 가치란 1차적으로 그 상품이 재화로서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데 기여한 인간노동의 집약된 개념이다. 여기서 바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윤의 개념이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노동과 정상이윤 및 지대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보편적 법칙이 곧 물질적 가치법칙이며, 지대나 이윤은 물론 그밖에 사용된 자본제 기구의 전체적 요인을 객관적 토대 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가치법칙과 더불어 모색될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란 곧 『소외된 노동』의 창조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재화의

사용가치(value in use)를 전제로 존재한다. 즉, 재화의 사회적 유용성이야말로 곧 가치의 1차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자원이라는 재화 역시 오늘날 하나의 상품으로서 사용가치를 지닌다. 다만 그 사용가치인 실체로서 가치에 관해서는 어업자원은 인간노동의 소산이 아닌 특수한 재화인 만큼 가치법칙에 의해 평가되는 지대라는 가치로서 간접적으로 파악되는 속성이 있을 뿐이다.

한편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품간에 이루어지는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의 개념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A. Smith는 이 두 가지 가치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여러 가지 재화를 화폐 또는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필히 지켜야 할 법칙』이 무엇인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치라는 개념은 두 개의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재화의 효용을 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정 재화의 소유(所有)에 따른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나타낸다. 전자를 사용가치(value in use)라고 하고 후자를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라고 한다.』⁴⁾ 화폐든 다른 어떤 재화든 모든 재화의 사용가치는 이질적 노동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선 이질적 노동의 동질화, 즉 노동의 추상화(예: 노동시간의 가치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노동의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르크스(1894)는 이때 화폐를 포함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사회적 평균노동, 즉 사회적 필요노동을 추상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그들의 가치라고 하였다. 환언하면, 각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추상화하여 상품간의 사용가치를 비교평가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에는 사용가치의 일편(一片)도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반면, 사용가치의 교환에는 일단 가치로 환원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 상대적 비율이 곧 교환가치인데,

4) A. Smith, Wealth of Nation(1776), Chapt. IV.

한 상품의 사용가치가 화폐가치와 비교될 때 비로소 객관적 가격(price)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가치라는 추상적 노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내재적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적 자유경쟁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 우리는 사회적 노동에 관한 추상적 가치의 형성과정을 하나의 필연적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에 직접 투하된 구체적 유효노동(사용가치)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에 의한 추상적 노동량(노동시간)으로써 정의되는 법칙에 이르게 된다. 특히 사용가치(구체적 유효노동)와 사회적 필요노동(추상적 노동) 가치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가치법칙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는 단순한 가치법칙이 아닌 잉여가치(value of surplus)의 법칙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하에서 잉여가치의 법칙은 당연히 노동 이외의 상품에 대한 가격으로 나타난 일반상품의 교환가치에 반영된다. 즉, 상품의 가격(화폐적 교환가치)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고정생산요소비용(어선과 같은 고정투자비용 등)과 변동생산요소비용(노동비용 등)의 총 비용을 초과한다. 이때 전자는 사실상 생산비용의 내용이지만, 자본제 하에서의 시장가격은 여기에 잉여가치가 가산된 것이다. 다만 현실 시장에 있어서 가격은 결코 개별적 생산단위에서 주어진 개별가치의 단순한 가치적 표시가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평균노동에 의하여 규제된 평균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 주어진 생산물 가치의 합계를 가격화한 것이 곧 생산비라는 개념이며, 상품의 생산비용은 모두 평균개념으로서 비용에 사회적 평균초과이윤(지대)을 합산한 것이다. 이때 평균초과이윤율은 총 잉여가치(지대)와 총자본의 비율이기 때문에 개별적 상품가치의 합계와 그 생산비용의 총 가치를 대비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대 역시 잉여가치의 범주에 속하며, 가치 = 가격(기회비용)이란 등식이 성립함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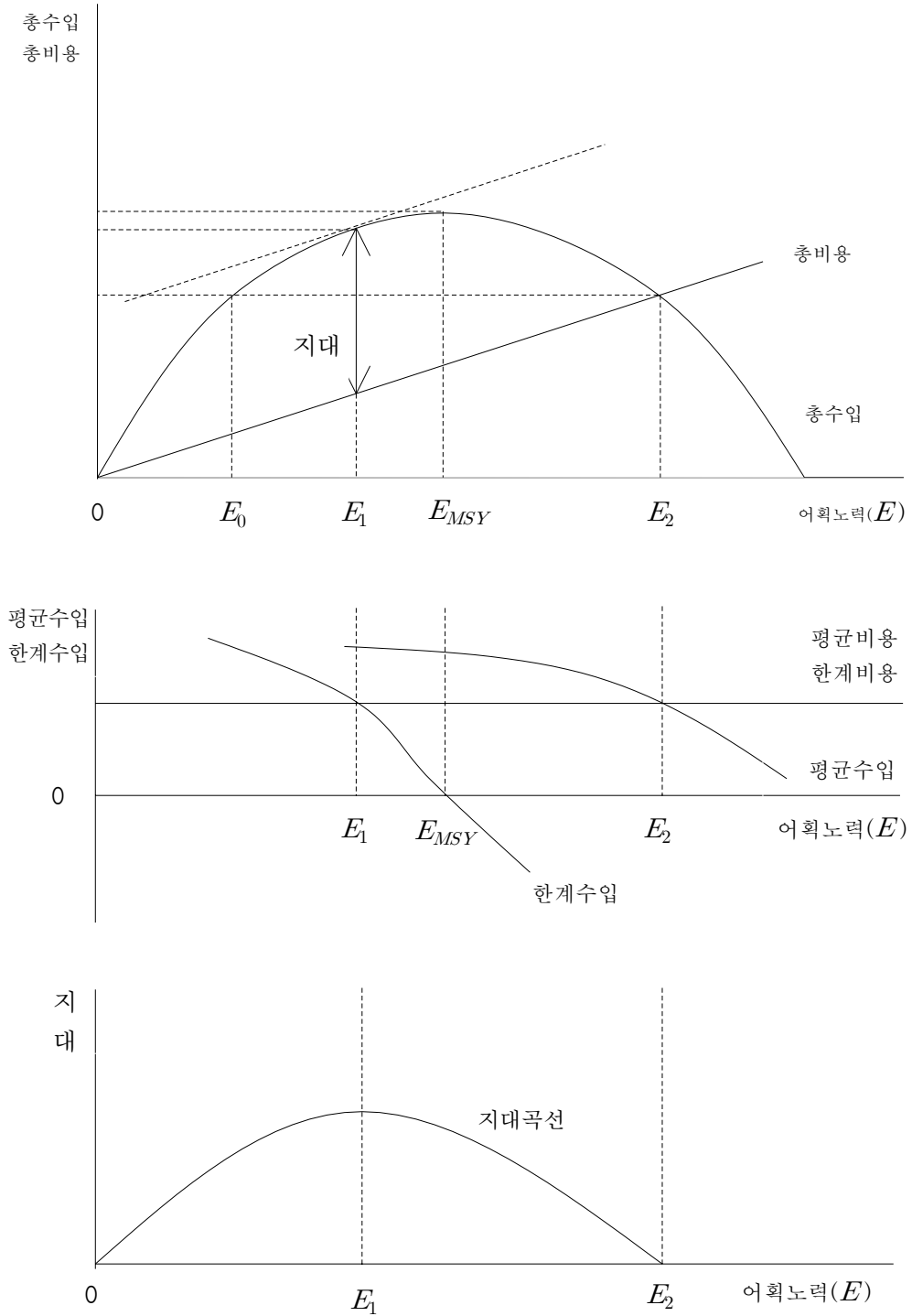
수 있다. 이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상품가치가 그것의 구체적 사용가치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사회적 기회비용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수산경제연구들 역시 신고전경제학 지대개념에 입각하여 어업자원지대 및 지대분배 문제를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어업자원지대(순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어선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과 선주가 지출하는 제반 기타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이 어업자원지대는 많은 경우, 일정한 고정비용으로 선주, 어선원, 어선, 어망 등 주요 어업 참여자와 참여장비 사이에 분배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지대 분배는 오래 동안 다양한 형태의 깃가림제⁵⁾ 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어선원에게 분배되는 지대는 개별 분배 몫에서 그들의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된다(Griffin, Lacewell and Nichols 1976, Anderson 1977/1982). 그러나 때때로 지대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선주와 어선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묵시적이긴 하지만, 어선원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노동 기회비용)와 선주가 제공하는 자본의 가치(자본 기회비용) 그리고 양자가 직면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된다.

2. 수입 · 비용 · 이윤 · 지대의 관계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업(자원)지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수입(revenue), 비용(cost), 정상이윤 또는 자본투자수익(profit or returns to capital investment), 지대(rent)와 같은 기본적인 신고전경제학적 개념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수입(revenue)의 개념은 수산물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양적

5) 깃가림제는 결부제(結負制)라고도 하는데, 이의 중추적 형태는 勞資共同負擔으로 하는 都中經費를 漁獲高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勞資 사이에 분배하는 형태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수호, 부산수산연보 6(2), 1965를 참고할 것)



[Fig. 1]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 cost · profit

개념이다. 여기서 개별 어업인 전체 시장공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양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가격 수용자로 정의된다. 비용(cost)의 경우에는, 그 개념을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비용은 단기비용과 장기비용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노동비용, 연료비용 등은 단기간에 변동될 수 있는 반면, 어선비용은 그것이 이용되는 그렇지 않은 대출에 의해 어선건조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에 걸쳐 원리금이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장기비용이다.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비용구분은 사회적 기회비용과 사적비용이다. 사적비용은 사적 개별 어업자나 어업회사에 의해 유발되는 비용인 반면, 수산물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은 어업에 이용된 생산적인 자원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가치를 의미한다. 예컨대, 사회적 기회비용은 통합적 관점에서 어업자원의 적정 이용률이나 어업에 대한 적정 투자수준을 결정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비용개념이다(Hannesson 1993). 완전경쟁 시장일 경우 사회적 기회비용과 사적비용은 일치하지만, 어업에 있어서 외부효과(예: 해양환경오염, 무임승차 등)가 발생하면 전자의 비용은 후자의 비용보다 높아진다.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을 막론하고 단기비용과 장기비용의 구분은 중요하다. 어망/어선과 같은 내구성 장비는 어획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기 어려우며, 그 장비를 어획에 이용함으로써 상실하는 가치는 사실상 매우 작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망과 어선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어획장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구성 장비의 비용에는 장비 자체의 비용과 대체성이 낮거나 아예 없는 특화된 장비형태의 제한된 자본비용이라는 두 가지 비용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윤(profit)은 수입과 비용의 차이

로 정의되며, 장·단기에 따라 장기이윤과 단기이윤으로 구분된다. 단기이윤은 수입과 변동비용의 차이로 정의되고, 장기이윤은 수입에서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예: 어선 등 내구성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별어업이 적정한 수준의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수입이 변동비용보다 같거나 높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총비용(변동비용 + 고정비용)과 같거나 그것을 초과해야 한다. 고정비용의 경우 중고어선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어업활동이 장기비용을 회수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선을 계속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어선을 팔 수 있다면, 분명히 어업활동을 계속하는 것보다 어선을 중고시장에 파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어선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어업이윤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중고시장이 그렇게 높은 중고어선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없다.

어업자원 지대(fishery resource rent)의 개념은, 마치 임대(차)인이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처럼, 자원의 이용자가 소유자에게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만일 어업자원 소유자 자신이 그것을 직접 어획한다면 지대는 암묵적이고 소유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윤과 같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소유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지대는 당해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이윤과 같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윤과 지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어업자원 소유자가 특정 수산물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그가 결정하는 생산/판매량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이윤은 시장 통제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 뿐, 자원의 소유권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윤은 어업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대가 아닌, 바로 독점지대인 것이다. 결국 어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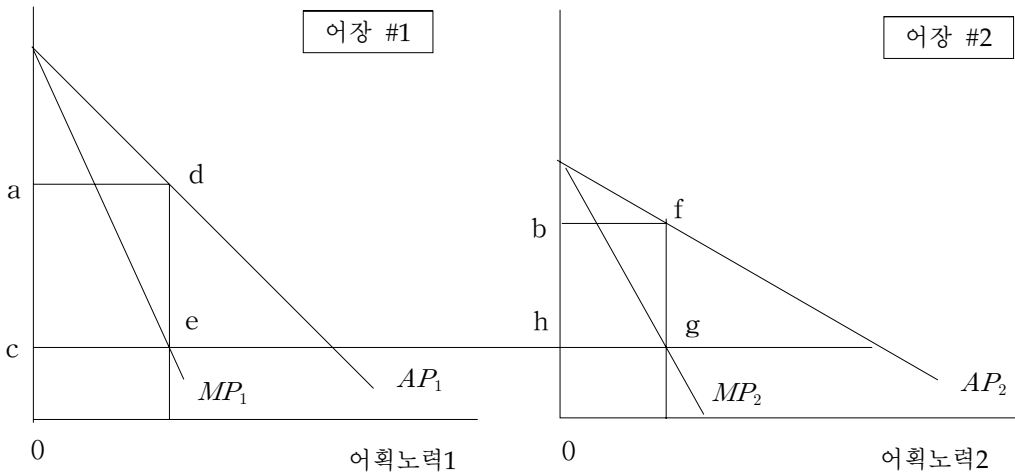
원)지대는 어업자원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어업자원이거나 어업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어업지대는 초과이윤 또는 순수경제지대와 같게 된다(Hannesson 1993).

3. 어업자원 이용 · 지대 · 지대분배

원래 D. Ricardo(1817)는 지대, 즉 『동일한 또는 새로운 토지로부터 얻어진 생산물 간의 부등(不等: 差額)』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토지(어장)의 비옥도와 위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따라서 어업에 있어서 지대란 곧 어업자원(어장)과 같은 자연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대의 발생원인은 단순히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력의 인위적 이용에 있으며, 자연력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 예컨대, 어장의 위치, 물고기 종류, 자원풍도는 차액지대 발생의 근원이지만, 차액지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해황과 같이 위치나 비옥도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자연의 속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의 투입방식이나 수산물 가격이 자연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독점적 자연력으로서 어장의 위치나 그것의 풍도 역시 원천적 속성을 따져보면,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Ricardo가 말하는 『불가괴적 자연(不可壞의 自然 indestructive nature)』과 관련된 지대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다. 2개의 어장(#1, #2)이 있다고 할 때, 어장 #1의 어업자원 관리가 어장 #2의 어업자원의 관리보다 더욱 잘 이루어진다면, 어장 #1의 어업자원 지대는 어장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그림 2), 양식어장의 경우에도 어장을 정화하거나 기존 어종을 다른 양식어종으로 대체함에 따라 쉽게 지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차액지대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업자원 기반 자체를 주어진 일정한 조건으로 상정하고 차액지대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지대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자본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어업자원관리를



주: $AP_i = i$ 어장의 평균생산, $MP_i = i$ 어장의 한계생산, ce 또는 $hg =$ 한계비용
 $\square acde =$ 어장 #1의 지대, $\square bhfg =$ 어장 #2의 지대,

[Fig. 2] Comparison of two fishing grounds with different productivity

가정해보자. 차등조건 하에서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경우 총평균생산비를 상회하는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차액지대로서 국가(어업자원의 주인)⁶⁾에게 지불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때 중요한 가정은 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총평균생산비 보다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만일 어업자원관리의 편익이 없는 다른 생산조건(어장의 위치나 풍도)의 어장 생산성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즉 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이들 어장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생산비용을 넘게 된다면, 거기서도 당장 지대가 발생하고 어업자원관리 지대는 더욱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되는 한, 개방어업의 역우 생산은 드디어 평균생산비와 시장가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지대가 소멸되는 지점까지 어업활동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후자의 어장을 한계어장(marginal fishing grounds)라고 하며 이 지점의 총평균생산비를 기준적 생산가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를 기준으로 어장의 우열에 따라서 어업자원 지대의 차등(差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⁷⁾ 요컨대 차액지대는 한계어장(최열등어장)에서의 정상이윤을 포함한 수산물 가격을 넘는 각 어장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지대)이다.

여기서 초과이윤인 어업자원의 차액지대는 궁극적으로 노동의 잉여가치를 나타내지만, 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상승하거나 동일한 시장가격 하에서 한계어장의 생산비용이 떨어지면 차액지대는 오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내린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

지만 지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는 Ricardo의 명제에 접하게 된다. 예컨대, 합리적인 어업자원관리의 결과 어장 및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그 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어느 정도 내릴지라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액지대가 증가하게 되고 전반적인 어업경영의 채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같은 거시적인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어종의 분포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참조기자원과 증가하고 있는 오징어자원, 남해/동남해역에서 증가하는 오징어자원, 멸치자원, 고등어자원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이용에 있어서 차액지대의 변동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장·어종 간 차액지대의 발생은 해양환경과 어업자원 분포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지되어온 어업관련 법·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해 오징어자원 증가와 조업 변화의 경우,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지금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금지 규정은 지역간, 업종간, 어업 내에서 복잡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업자원(어장) 지대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멸치 등 다른 어업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어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i) 해양생태환경의 변화는 어업자원의 분포와 그에 따른 차액지대의 변화를 가져오며, (ii) 따라서 어업자원, 즉 자연력의 이용·관리 및 지대 분배를 규율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도를 둘러싸고 지역간, 업종간, 어업내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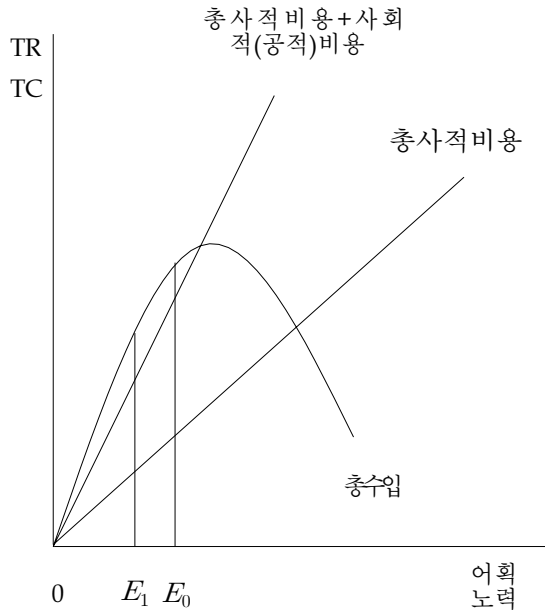
4. 어업자원지대와 정부재정지원

어업부문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government

6) 사실, 어업자원은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이지만, 국가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어업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를 어업자원의 주인으로 추상화하였다.

7) 그런데 이때 어느 어장에서나 생산비용(비용 + 평균 또는 정상 이윤)을 규정하는 평균/정상이윤은 어업 이외의 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이윤율의 수준을 의미한다.

financial transfers GFTs)은 정부정책과 관련된 모든 지원의 화폐적 가치로 정의된다. 보조금이나



주: TR=총수입, TC=총비용, E_0 =정부지원 하에서 어획노력 수준, E_1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획노력 수준.

[Fig. 3] Gordon/Schaefer model analysis including private and social costs

수산물 및 생산요소 가격에 대한 정부개입과 같은 직·간접 정부재정지원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어업인들이다. 일반적으로 GFT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경제재화, 즉 사적재화 및 공유재화의 이용/관리 및 사적/사회적(공적)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어업인들의 인센티브구조(예: 편익과 비용)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그림 3). 따라서 어업인들은 정부지원정책이 유인하는 방향으로 어업활동을 하게 되고 자원이용구조도 영향을 받게 된다(OECD 1999).

따라서 모든 직·간접 정부재정지원정책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가격변화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어업지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가격안정정책

은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기자재에 대한 영세율(零稅率)정책은 어업생산요소가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어업지대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상 진전에 따라 면세유 공급정책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는 어업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총어업경비 중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로 높기 때문에 어업용 유류가 면세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어업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어업생산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산물 가격이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결국 어업지대가 소멸되고 어업채산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채산성 악화는 결국 어가부채 상승과 부채상환능력

8) 영세율이란? 영세율(zero rate)은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이다. 즉 매출세액은 매출액×0% 즉, 0(세금계산서는 발행)이나 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 즉, 전 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영세율이 완전 면세라고 하는 이유는 면세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반면, 영세율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세율제도는 소비에 나타나는 담세력과 관련된 또는 사회정책적인 배려에 활용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부담을 완화 혹은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세율제도는 원래 간접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에 입각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수출산업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세율의 적용을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며(부법 11⑩),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간접세 부담을 완전 면세하여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하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표 1).

<Table 1> The trend of fishing household debt (단위 : 천원)

연도	계	어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1999	19,645	8,056	3,297	4,344	3,948
2000	22,293	9,031	3,862	4,610	4,970
2001	22,848	9,617	4,233	4,592	4,406
2002	28,792	10,833	6,753	4,511	1,695
2003	29,836	16,696	7,515	4,033	1,592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4.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어가소득과 부채문제는 산업간, 어업간, 어업내 소득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런 소득 불균형은 중국적으로 사회/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를 안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도 우리나라 산업별 손익관계 비교표를 보면, 모든 지표상 수산부문 이익률(0.61-4.68%)은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여타 산업(4.65-11.66%)보다 크게 낮은 상태에 있다. 특히, WTO 보조금협상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 2)는 한편으로 왜 국내 수산부분이 왜 정부재정지원을

<Table 2> Profit rate by industry(2003)

구 분	총자산경상 이익률	기업경상 이익률	자기자본경 상이익률	매출액경상 이익률	매출액순 이익률	매출액영업 이익률
어업	1.75	4.00	4.68	1.82	0.61	3.97
광업	0.57	4.28	2.66	1.11	-0.29	-2.60
제조업	5.15	7.21	11.7	4.68	3.82	6.87
전기, 가스 및 증기업	6.12	7.31	10.56	12.64	8.97	11.52
건설업	6.13	8.28	16.81	4.44	3.24	5.31
도매 및 소매업	6.09	7.98	17.95	3.35	3.19	4.12
운수업	1.67	4.6	6.67	1.95	1.13	4.32
통신업	6.45	9.31	17.07	10.61	6.95	16.00
부동산 및 임대업	1.53	2.79	3.68	3.99	2.03	6.99
사업서비스업	3.2	4.26	6.44	2.28	0.82	3.0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5.52	6.73	14.05	12.98	9.19	14.37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4.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제·사회·정치적 단서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수산관련 규범과 국내 법·제도 및 정책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III. 어업자원 이용과 지대추구활동

1. 공공선택(정책)에 대한 인식

소유권이 분명한 토지자원이나 산림자원과는 달리 어장이나 어업자원처럼 소유권 확립이 극히 어려운 공유자원(共有資源)의 관리는 공공영역(公共領域)에 속해 왔으며,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어업자원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는 허가 또는 면허 제도와 규제를 통해, 어업자원의 개별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동시에 어업자원과 이용의 지속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박 1999).

이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 대상인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어업지대 및 분배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많은 경우 정부와 이용자 사이에 심각한 사회·정치적 갈등이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다른 하나의 이해그룹)들로 구성된 정부는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 정책

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헌법정신에 따라 반드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 때때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공공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바로 공공정책 또는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존재한다.

공공선택 연구를 통해 답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i) 공공정책의 경제적 순수 효율성은 대안적인 합헌적 규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ii)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협상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iii) 합헌적 규칙⁹⁾의 선택은 어업의 정치적 지배함수에 나타나는 어업정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에 관한 것이다.

공공선택연구 분야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에 공공부문 정책에 관한 두 가지의 극단적 관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관점은 영향력 있는 이해그룹 사이에 공공/공유재화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소위 정치시장(政治市場)에서의 공공재/공유재의 배분에 초점을 둔 공공선택의 관점이다(Buchanan and Tullock 1962, Olson 1965, Becker 1991). 공공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대추구 활동¹⁰⁾이 사회적 낭비와 정부실패를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많은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정부개입과 같은 정책수단의 모색은 사실 쉽지 않으며 어쩌면 임시방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실패는 현실적으로 뜻하지 않은 많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불분명하고 안전하지 못한 재산권,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과 정보, 비가역성, 공공재·공유재의 비효율적 배분, 지대분배의 불공평성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시장실패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패러다임은 주로 전통적 후생경제학적 이론으로부터 연유된다. 이 분석 틀과 이론적 기준은 최선(first-best)의 결과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과 정부는 민간부문의 배분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

어업자원의 경우, 정부는 배분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자원지대 (resource rent) 추구자(어업인)들과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관여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은 여러 이해그룹과 정부 사이에 배분되어 있으며, 권력의 불균형적 배분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전제 하에서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패러다임은 정부는 모종의 분리된 자치력을 가질 수 있으며 리더쉽 잉여(leadership surplus)를 모색·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Froelich, Oppenheimer and Young 1971).¹¹⁾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많은 어업 이해그룹을 포괄하면서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수용하는 내적 일관성을 가진 분석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 공공부문은 불확실성과 복잡성, 제한된 합리성 및 불안정 정보구조 하에서 수많은 개별 어업주체들에 의한 집단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Williamson(197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어업그룹은 그룹행위를 유인하는 센터(center, 정부)와 정부에 의해 통제 받는 주변 참여자(peripheral participants, 어업인)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정부의 선택은 개별 어업주체들의 후생에 영향을 끼치고 어업인들

9) 합헌적 규칙(rules)이라 함은 헌법정신에 따라 부(富) 또는 후생(厚生)의 배분왜곡을 방지하고, 균형적 배분을 촉진하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말한다.

10) 지대추구활동이란 지대를 인위적으로 획득·확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영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부개입과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 59-61』을 참고할 것).

11) Froelich · Oppenheimer · Young에 의하면, 리더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른 잠재적 리더들과 경쟁하며, 일단 집권하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집단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잉여 또는 이익을 극대화한다.

의 후생(목적함수)은 어느 정도 정부의 의사결정 변수의 함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정부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정부 역시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수산관련 정부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한 다양한 어업그룹의 완전한 목표수용(goal internalization)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사실, 수산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업인들의 잠재적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어업인들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압력단체를 통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의 선택이 어업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이들 이해그룹들은 실질적 편익과 정치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센터의 선택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어업인들은 실질적 이익을 유보하거나 정부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Harsanyi(1962)와 Zusman(1976)이 지적한 것처럼, (N+1)사람의 협상게임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협력적 협상해(協力的 協商解 cooperative bargaining solution)에 의해 조직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조직균형 하에서의 선택은 각 어업관련 그룹의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하고, 이는 어업인들과 정부간 이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타협의 결과이다.

여기에 제안된 패러다임(paradigm) 하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업정책은 어느 정도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적 산출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중심적 조정자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센터(정부)와 종속적 주변 참여자(어업인) 사이에 계층적 관계가 형성된다. 수산당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그들 자신의 실질적 후생,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권력에 둔감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직구조 하에서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여러 어업그룹의 행위에 노출된다. 어업인들은 사적이익(지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자치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보편적 합리성¹³⁾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다.

2. 정부의 정책결정과 어업인들의 지대추구 행위 사이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정부와 어업인(어업그룹) 사이의 관계는 Hardin(1968)이 말하는 「공유재의 비극」 문제를 가지고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원의 크기(예: 최대지속적 잉여량)를 표준화하고, 진입과 탈퇴가 엄격히 제한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자원과 같은 공유자원(common resources)과 가격, 비용, 시간에 대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의 의사결정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박 2001).

- 정리 1 : 한계비용과 최소평균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 적정이용률 (y^*) 결정된다.
- 정리 2 : 정치선호도가 중요시될 경우, 정부와 어업인 사이에 협상에 의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직균형의 자원이용률(y^s)이 결정된다.
- 정리 3 :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 어업자원과 같은 공공재를 이용하여 개별 어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12)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센터(정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수산 이익단체인 대형기선저인망 업계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협상결과가 나타나자 센터에 강력한 보복을 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협상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이 특정 이해그룹으로서 유례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다.

13) 보편적 합리성이라 함은 공공정책이 영향력 있는 단체나 소수의 이해관련자들의 이익보다는 영향력이 약한 다수의 후생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경쟁시장이 존재할 경우,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 점에서 적정이용률 (y^b)이 결정된다.

■ 정리 4 :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개방어업 일 경우, 자원의 적정 이용률(y^d)은 가격과 평균생산비가 같은 생산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단, y^d 에서 자원지대는 완전 소멸된다).

아래 (그림 2)는 사회적 적정 자원이용 수준 (y^*), 특정 이해관계의 자원이용 수준(y^s), 정치적 조직균형의 자원이용 수준(y^b), 개방어업 하에서의 자원이용 수준(y^d)을 나타낸다. 지배가중치(예: 이해집단의 영향력)가 양의 값을 취할 때, 이 점에서 곡선 SS(조직균형 하에서 사회적 자원이용 곡선)는 한계비용곡선 보다 큰 기울기를 가진다. y^b 은 점선 SS와 평균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자원이용률이고 y^d 는 시장가격선 PP' 과 평균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의 자원이용률¹⁴⁾이기 때문에 y^* , y^s , y^b , y^d 사이에는 $y^* < y^s < y^b < y^d$ 의 관계가 성립한다.

개별 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균형의 자원이용률(y^b)은 특정 이해관계 자원이용 수준(y^s)을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업사회의 이해

관계를 내부화하는 정도에 따라 집합적 행위는 여전히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사적행위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어업 이해집단의 자원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비효율적 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집합적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어업자원의 과도이용에 기여하는 시장유인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 내 힘의 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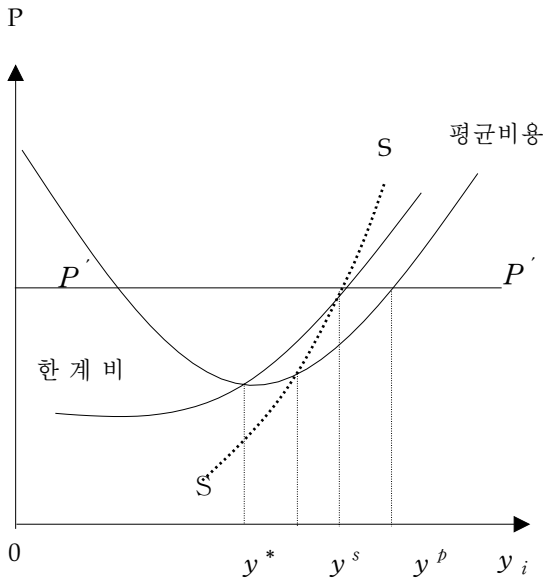
3. 처방적 평가

상기 분석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어업 이해집단의 목표를 완전 내부화(full internalization) 또는 수용하면 특정 지배가중치(governance weights)를 가진 조직균형이 이루어진다. 지배가중치, 즉 이해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부는 효율적이고 공적(公的)인 적정화와는 거리가 먼, 개별적이고 이기주의적 자원이용의 적정화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가 몇몇 이기주의적 어업 이해집단만을 위한 정책을 취하는 극단적인 경우,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이런 여건 하에서 사회적 후생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른다.

정부조직 실패의 정도는 (i) 비합리적이고 이기주의적 어업인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외부화(externalization), (ii) 정부에 의한 어업그룹 목표의 내부화, (iii) 정부에 대한 어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가 그룹목표를 내부화 하지 않으면, 집합적 행동의 존재이유는 실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부가 어업 이해그룹 목표를 내부화 하고, 어업인들이 그것을 외부화할 수 없거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면, 어업자원관리에 대한 공익(公益)이 극대화되며 어업인들의 그룹행위는 적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되고 공공부문의 행위는 생산적이 되어 공공부문의 비합리적 행위가 사라진다.

지배 또는 정치적 선호함수의 흥미로운 특징은

14)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같은 프로그램 하에서 치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획노력은 어업지대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즉, 시장가격 또는 한계수입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는 자원이용률에 이를 때까지 어획노력이 증가한다(H. Scott Gordon. 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J. of Political Economy 62: 124-142, 1952. Gordon의 이런 경제학적 관점은 Hardin(1968)의 생물학적 관점 소위 생물학적 공유재의 비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Fig. 4] Equilibrium use rate of fishery resources

정치선호함수가 현시선호분석(revealed preference analysis)에 의해 실증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배가중치에 가변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합적 선택규칙 또는 합헌적 선택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연속 집합적 선택규칙 하에서 합헌적 어업정책처방은 의사결정 주류집단(core)¹⁵의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 집단 내부 주류집단의 의사결정 결과는 대안적 지배가중치(정치선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단독 의사결정자 규칙에서 만장일치 규칙으로 이행할 때 협상 및 조직화 비용의 증가를 예상할 수

15) 의사결정 중심(core)의 개념적 의미는 간단한 경제의 경우 명확하다. 어떤 외부효과도 존재하지 않고 연합조직(coalition)에 있어 멤버들의 효용이 연합조직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런 간단한 경제를 상정할 경우, 의사결정 중심(core)이란 곧 연합체들이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타내며 자신들의 반대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듯이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Werner Hilderbrand, Core and Equilibria of A Large Econo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7-129, 1974).

있다

예컨대, 특정 어업그룹을 가정하면, 주류집단이 작을 경우 비주류집단 구성원들의 비용으로 전체 구성원들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해(解)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주류집단이 크면, 그 구성원들의 선호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들이 합의하는 결과는 비주류 구성원들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특정 어업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효용수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정력을 가진 집단의 크기는 작아진다.

합헌적 처방의 범위는 최종 의사결정과 비용에 대해 특정 어업조직 구성원들이 보이는 기대효용의 민감도에 따라 선택된 대안적 규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분산과 최소 협상비용을 보이는 단독 의사결정은 중요성이 낮은 사안에 한정된다. 예컨대,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부분의 수산현안에 관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 정책이슈는 일반적으로 간부회의, 각종 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된다. 단순 다수결 규칙은 중위 분산과 의사결정 비용을 수반한다. 최소분산과 최대협상비용을 수반하는 특별 다수결 규칙 또는 과반수 규칙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경우에 요청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선호함수가 주어질 경우, 지배가중치의 문제다.

그러나 수산정책의 성과변수들 역시 합헌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센터(정부)가 설정하는 수산정책사업 계획기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 짧은 계획기간(예: 수협개혁 등 각종 수산관련 개혁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단기계획은 흔히 장기계획(예: 어업구조조정 등) 보다 단기계획을 선호하는 어업 그룹행위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처방적 이슈는 정책결정자가 조직에 봉사하도록 허용 받은 기간의 합헌적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정책결정자가 공공이익 추구에 실패하고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합헌적 규칙이 존재할

수 있다. 환언하면, 합헌적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익추구에 실패한 공무원을 정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합헌적 규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칙들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타 시민들의 인권 및 시민권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IV. 어업지대와 지대 공수론(公收論)

어업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자연법적 공유론의 단점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이론에 의해 보충됨으로써 공유론은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액지대가 갖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J. S. Mill(1965)¹⁶⁾에 의하여 제기된 지대공수론(地代公收論)은 자원 공유론의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리카도나 그에 앞선 차액지대론자들이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실천적 이론의 보충이 Mill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재론할 필요도 없이 차액지대는 곧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진다. 사실 Mill은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지대소득을 과세(課稅)를 통해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하였고, 실제로 회수운동을 벌였던 선구자였다. 따라서 그의 이론과 운동은 자연법적 자원(예: 어업자원, 토지 등) 공유론을 넘어서 현실적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 다만 Mill의 이론의 한계성은 (i) 그의 이론이 1차 산업에 국한된 불로소득의 공수론(公收論)에 머물러 있고, (ii) 산업간 지대 또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Mill이 말한 지대, 즉 차액지대론은 수산업 등 여타 산업에도 발생한다. 어업자원

지대와 Marshall의 이른바 준지대(quasi rent)도 그러한 지대 개념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 볼 때, 어업자원지대 역시 일종의 초과이윤 또는 불로소득(excess profit or windfall gain)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대와 비교해보면, 어업지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현실적으로 자본제적 경제 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간, 산업간 지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근원적이며 또한 크다는 것이다. 모든 자본제적 산업에 있어서 자본가들은 지대를 자본에 대한 위험보수/위험 프리미엄(returns to risk 또는 risk premium)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노동을 단순한 『물적 생산요소』가 아닌 『인간소외의 소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대를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바로 마르크스의 이론이 시사하는 이른바 자본가와 노동자간 갈등이 시작된다.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서 지대에 대한 양자의 인식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수정자본주의의 형태로서 참여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¹⁷⁾가 태동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G. Kelly, D. Kelly and A.

17) 참여란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회원이 아니면 참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회원에게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여된다. 즉,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참여에는 권리에 수반하는 의무가 따르며,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상호성이 존재할 때 참여주의 사회 혹은 참여주의 경제가 성립될 수 있다. 참여자본주의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완전 자유방임경제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자는 경제원리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시장의 영역이며, 참여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또한 시장자본주의에 참여자본주의를 접목시킬 때, 개인주의와 같은 시장자본주의의 특성은 참여·합의와 같은 참여자본주의의 특성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비록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경제적 문제(물론 여기에는 지대 분배 문제가 당연히 포함됨)는 사회적·정치적 관계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제·사회·정치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게 된다(G. Kelly, D. Kelly and A. Gamble 1997).

16) J. S. Mill의 정치경제학 원론은 1848년 처음으로 영국에서 출간되었지만, 그 후 1965년 University of Toronto Press에 의해 새로 출간되었다.

Gamble 1997).

특히, 지대가 정치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곧 불노소득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만큼 누구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높은 초과 매매차익(즉 지대 = 불노소득)이 경제·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대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지대를 공수(公收)하기 위해 유예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자원의 공급이 극도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클 때 수요 푸시(demand push)에 의해 서울 등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른 지대(불노소득) 상승이 심각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대론적 관점에서 Mill의 지대공수론을 다시 상기해 볼 수 있다.

수산업의 경우, 어업자원지대는 여타 산업에서의 지대에 대한 속성과 사뭇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업지대를 둘러싸고 자본가로서 선주와 노동자로서 어선원간에는 앞서 언급한 인식의 격차와 갈등이 상존하는 반면, 자영(또는 가족) 영세어업인들은 선주와 어선원간에 실재하는 지대 갈등과 같은 문제가 없는 대신 크든 작든 스스로 지대를 향유한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지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어업자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어업인들에게 어업자원지대의 일부 또는 모두를 공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어업자원관리 비용을 전담하고 생산비용의 상당부분을 간접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업자원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있다. 왜 그런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업자원 또는 어업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은 날로 감퇴현상을 면치 못하고 어업경영 또한 뚜렷한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어업 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업자원 감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대 극대화를 위한 지대추구활동을 통해 과잉어획노력의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산 선진국들은 과잉어획노력 투입을 줄이고 어업자원관리를 효과적이고 어업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대의 일부를 공수(公收)하여 어업자원 관리비용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수혜자부담원칙을 정립하고 자율적 어업자원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일종의 지대공수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왜 수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어업자원 지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수(公收)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어업관리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전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 이유가 있다. (i) 어업은 해양이라고 하는 매우 가변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ii) 어업의 영세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율(지대의 상대적 크기)은 자본축적과 소득향상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iii) 자가(가족)노동(self or family labor)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은 윤리적으로 매우 신성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가노동』은 『소외된 상품적 노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성한 가치』를 지닌 인간가치로서 잉여노동가치를 창출한다는 데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지대의 상대적 고저(高低)는 산업간·지역간·어업간·어업내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산업간 형평성 및 수산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인과

관계(因果關係)는 분배적 정의론¹⁸⁾의 관점에서 조세정책(예: 어업기자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지원정책(예: 수산부문 정부투융자정책)에 관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지대문제는 선택된 사회체제(예: 법·제도) 내에서 공공선택(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한·일어업협정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상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 등에 따른 국내 어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지대의 분배적 정의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진전되고 있는 수산부문 무역 및 보조금 관련 국제협약이 세계적으로 생산 및 무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앞의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업간 이익률 또는 상대적 지대수준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 이상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비록 영세어업이 차지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의 상대적 절대적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사람 문제, 즉 어업 경영자와 종사자들의 생존문제는 그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의 충격에 취약하며 상대적 효율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산업에 있어서 지대추구활동은 더욱 확산/강화되고 어업 및 어업자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어업자원의 균형적 이용과 관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업자원 지대(즉, 초과이익 또는 불노소득) 문제와 지대추구행위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어업자원 지대를 포함한 지대분배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인 경제·사회·정치적 이슈가 된다. 특히 공유자원으로서 어업자원은 재산권 확립이 극히 어렵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업자원의 이용권은 허가제도와 면허제도에 의해 배분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절대지대 또는 차액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어업자원 이용관리에 있어서 경합성, 비배제성, 도덕적 위험(해이), 감시감독의 취약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업자원 지대의 소멸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점이 곧 부동산 지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반면,¹⁹⁾ 어업지대 문제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따라서 선진 수산국가들은 경합성 완화와 무임승차 문제 해소 그리고 지속적 어업발전과 상대적 지대향상, 산업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제도 하에서 사적 소유권의 속성을 지닌 이른바 개별양도가능할당(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방법 등 다양한 자원이용 시스템(i.e. quota system)과 합리적 어업관리비용 분담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Arnson and Gissurarson 1999).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선진 수산국 어업관리정책의 진화과정

18) 여기서 말하는 분배적 정의론(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은 J. 롤즈(Rawls 1971)의 개념을 의미한다. 롤즈의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그것의 배경적 제도로서 사회체제의 선택에 있다. 즉, 지대를 분배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핵심과제는 과세, 재산권, 이용권 등에 관해 어떤 합의된 사회체제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19) 수산업 문제와 달리 부동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지대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사회적 믿음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 정부의 부동산 강경책은 지속될 수 없다. (ii) 부동산 불패신화는 유지될 것이다. (iii) 갈 곳 없는 시중 부동산자금이 여전히 많다. (iv) 저금리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v) 아직도 주택보급률은 낮다(일반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20%에 달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뚜렷하고, 수산업과 여타 산업간 소득격차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어업관리정책의 발전적 진화과정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여타 산업간 이익률 또는 지대의 격차도 작게는 2.5배 크게는 7.6배에 달한다. 환언하면, 이는 어업인들의 지대추구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해 강하고, 수산업과 여타 산업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크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활동 문제와 어업소득 격차 문제는 장기적으로 자연자원의 의존적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어업부문의 지대추구활동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법어업이 상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수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dilemma)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 어업은 해양이라고 하는 매우 가변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ii) 낮은 지대와 어업의 영세성은 자본축적과 소득향상 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iii) 자가노동(self-employment)에 의해 영위되는 어업은 윤리적으로 매우 신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희박하고, (iv) 어업지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산분문 정부제정지원정책을 현재보다 확대/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김준보, 토지문제와 지대이론, 한길사, 1987.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 이론, 한국 수산자원학회지 제3권, 2001.
 박성쾌, 오징어 정치경제학, 도서출판 한길, 2003.

동서문화사, 파스칼 대백과사전, 2003.
 岡本清造, 漁場地代論, 御茶の水書房, 1979.
 Anderson, L. G. The Economics of Fisheries Management,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_____, Optimum Effort and Rent Distribution in the Gulf of Mexico Shrimp Fishery: Commen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4(1): 157-59, 1982.
 Arnson, Ragnar and Hannes H. Gissurarson,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n Theory and Practice, The University of Iceland Press, 1999.
 Bazel, Yoram,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Becker, Gary S.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 J. Econ. 68, 1983.
 Bergland, H., D. Clark, and P. Pedersen. Rent Seeking and the Regulation of a Natural Resources. Marine Resource Economics 16, pp. 219-233, 2002.
 Buchanan, J. M, R. D. Tollison, and G.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0.
 Froelich, N. J., A. Oppenheimer, and J. Young. Political leadership and collective good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Gordon, A Scott. 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J. of Political Economy, 62, 1952.
 Gould, J. R. Extinction of a Fishery by Commercial Exploitation: A No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1031-38, 1972.

- Grafton, R. Q. Rent Capture in a Rights-Based Fishery. *Journal of Griffin*, W. L., R. D. Lacewell, and J. P. Nichols. 1976. Optimum Effort and Rent Distribution in the Gulf of Mexico Shrimp Fisher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8: 644-52.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8(1). 1995.
- _____, R. Optimum Fishing Effort and Economic Rent : A Case Study of Cyprus, Fisheries Technical Paper 299, FAO, 1989
- Hannesson, R. Bioeconomic Analysis of Fisheries. FAO, 1993
- Hardin, G.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 Harsanyi, J. C. Measurement of Social Power in n-Person Reciprocal Power Situation. *Behavior Sci.*, VII, 1962.
- _____, J. C. Rational Behavior and Bargaining Equilibrium in Games and Social Situations, *Cambrid and Equilibria of A Large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7.
- Hilderbrand, Werner. *Co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Kaufmann, Barry and Gerry Geen, Cost-Recovery as a Fisheries Management Tool, *Marine Resource Economics*, Vol.12. 1997.
- Kelly, Gavin, Dominic Kelly and Andrew Gamble, *Stakeholder Capitalism*, Mamillan Press LTD, 1997.
-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74.
- Malthus, T. Robert, *An Inquiry into the Naute and Progress of Rent, and th Principles by Which It Is Regulated*, Modern Library, London, 1815.
- Marshall, Alfred, *Principles of Economics*(8th Ed.), Macmillan & Co LTD, 1957. (First Edtion 1890).
- Marx, Karl, *Capital*(1867), in *The Marx-Angels* (2nd ed.) edited by Robert C. Tucker, 1972.
- Mill, J. St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noto and Buffalo, 1965.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icardo, David(정윤현 번역),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17), 비봉출판사, 1991.
- Say, J. Taité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03.
- Schmitz, Andres, Harley Furtan and Katherine Baylis, *Agricultural Policy, Agribusiness and Rent-Seeking Behavior*,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2002.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the Nations*(1776), Modern Library Edition, (ed.) E. Cannon, 1937.
- Edwards, Steven F. Rent-Seeking and Property Rights Formation in the U.S. *Atlantic Sea Scallop Fisher*, *Marine Resource Economics* 16: 263-275, 2002.
- Tollission, Robert D. Rent Seeking: Survey, *KYKLOS*, Vol. 35, pp. 575-602, 1982,
- Thünen, J. von,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andwirtschaft und*

- Nationalökonomie, 1826.
- Tweeten, Luther. Domestic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Directions. In Agriculture in Rural Areas Approaching the 20th Century, R. J. Hildreth et al.(ed.), Ames: Iowa University Press, 1988.
- Williamson, O. E. Markets and Hierachies: Analysis and Antitrust and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Zusman, P. The Incorpor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Power and Economic Models. Inter. Econ. Rev., 1976.
- _____, Public Policies, Pressure Groups, and Deadweight Costs. J. Polit. Econ., 28, 1985.